

폐수 [] 수탁처리업 [] 변경허가 신청서
[] 재이용업 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 쪽)

허가(신고)번호 제 호	접수일	처리기간 10일
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 (신고인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
	사무실 주소	(전화번호:)
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)
	착공 예정일 년 월 일	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

변경허가·신고 명세

변경 내용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6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폐수 [] 수탁처리업
[] 재이용업 의
[]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.
[]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5,000원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) 3.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	(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,000원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※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